

[집합투자기구 변경 안내]

가. 대상 펀드 : 교보약사 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나. 변경 시행일 : 2017년 1월 16일

다. 변경 내용 :

- 결산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이익금 유보

[집합투자규약]

| 구분 | 정정전 | 정정후 |
|------------|--|--|
| 제33조(이익분배) |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u>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u>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u> 1. <u>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u> 2. <u>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u> |
| 부 칙 | <u>신설</u>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투자설명서]

| 구분 | 정정전 | 정정후 |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 |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삭제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표준편차 <u>12.99%</u>)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표준편차 <u>12.11%</u>)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 | |
|--|---|--|
| 구의 투자위험 | | |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 <p>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매3개월) 익영업일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u>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u></p> | <p>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매3개월) 익영업일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p> <p>※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10월 18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p> <p>- 기대효과 : 투자신탁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지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p> <p>-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p> |

| | | |
|---|---|--|
| | | <u>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인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 과세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u>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삭제 |

[간이투자설명서]

| 구분 | 정정전 | 정정후 |
|----------------------------------|---|---|
|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투자위험 등급 분류 | 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표준편차 12.99%)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표준편차 12.11%)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